

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(제22조의11 관련)

1. 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

- 가. 사실과 다르게 표시·광고하는 행위
- 나.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·광고하는 행위

2. 기만적인 표시·광고

- 가.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·광고하는 행위
- 나.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·광고하는 행위
- 다.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·광고하는 행위

3.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·광고

- 가.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·광고하는 행위
- 나.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(최대, 최고, 최초 또는 유일 등을 말한다)을 사용하여 표시·광고하는 행위

4. 비방적인 표시·광고

- 가.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·광고하는 행위
- 나.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·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의 세부유형
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